

제 335 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법령 ·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보고

2026. 4.

관광체육국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(관광체육국)

□ 건의사항: 총 1건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관광통역안내사 책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	관광산업과

작성 자

관광산업과장: 남규하 ☎ 2133-2770 관광서비스개선팀장 : 정인선☎2792 담당: 이경호 ☎2793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(관광산업과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관광통역안내사 책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(관광산업과, '26. 2. 20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광통역 안내사 제도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 안내는 자격을 가진 자(관광통역안내사)가 하도록 의무화 ○ 이에 따라 국가자격시험, 자격관리(자격증 교부, 교육 등)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함 (자치단체는 무자격자 단속) <p>※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: 총 42,122명('25년말 기준) - 영 12천명, 일 13천명, 중 13천명 등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부 여행사에서 중국·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여행 상품 운영시 여행사 가이드가 역사에 대해 왜곡해 설명하는 사례 발생('26.1.17. 언론보도) ○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설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광통역안내사의 '성실·정확 안내 의무' 조항 신설로 책임성 강화 ○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로 관광통역 품질관리 체계 도입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광진흥법 제38조 및 제39조 	<p>문화체육관광부</p>

□ 관광진흥법 제38조 및 제39조

현 행	개정안
<p><신 설></p>	<p>제38조2(관광통역안내사의 준수사항)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에 기반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야 하며, 대한민국의 역사·문화를 중대하게 왜곡하거나,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<p>제 39조(교육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</p> <p><②항 신설></p>	<p>제 39조(교육) ① (현행 제39조 본문과 같음)</p> <p>②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,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올바른 이해, 해설기법 등에 관하여 매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